

유해화학물질 지도점검 방향 및 화관법 개정사항

2019. 2.



한강유역환경청
시흥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

목 차

1

일반 현황

2

지도·점검 절차 및 규정

3

지도·점검 및 개선 사례

4

화관법 주요 개정사항

5

화관법 정책방향

6

화관법 주요 위반사례 및 당부사항

시흥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 구성

- 국가안전정책조정회의 「범정부 화학재난안전관리 체계」 확정 ('13.7.19)
- 「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 ('13.11.25)
- 시흥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 개소 ('14.1.24)

■ [구성]



■ [역할] 합동지도 점검, 현장 안전진단·기술지도, 작업자 안전교육, 사고 발생시 즉시 대응

■ [위치] 시흥, 서산, 익산, 여수, 울산, 구미 6개 화학산업단지 지역에 위치

일반 현황 > 관할지역 및 공동전담구역

구분	관할구역	면적(km ²)	인구(천명)	위치도
계	12개 기초자 치단체	1,352.6	4,185	<p>● 시흥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p>
인천광역시	전역 (10개 군·구)	1,062.6	3,002	
경기도	안산시 시흥시	154.2 135.8	731 452	

● 공동전담구역: 시화산단(MTV 포함) 12,202개소, 반월산단 7,103개소 등 총 19,305개소('18.7. 기준)



목 차

1

일반 현황

2

지도·점검 절차 및 규정

3

지도·점검 및 개선 사례

4

화관법 주요 개정사항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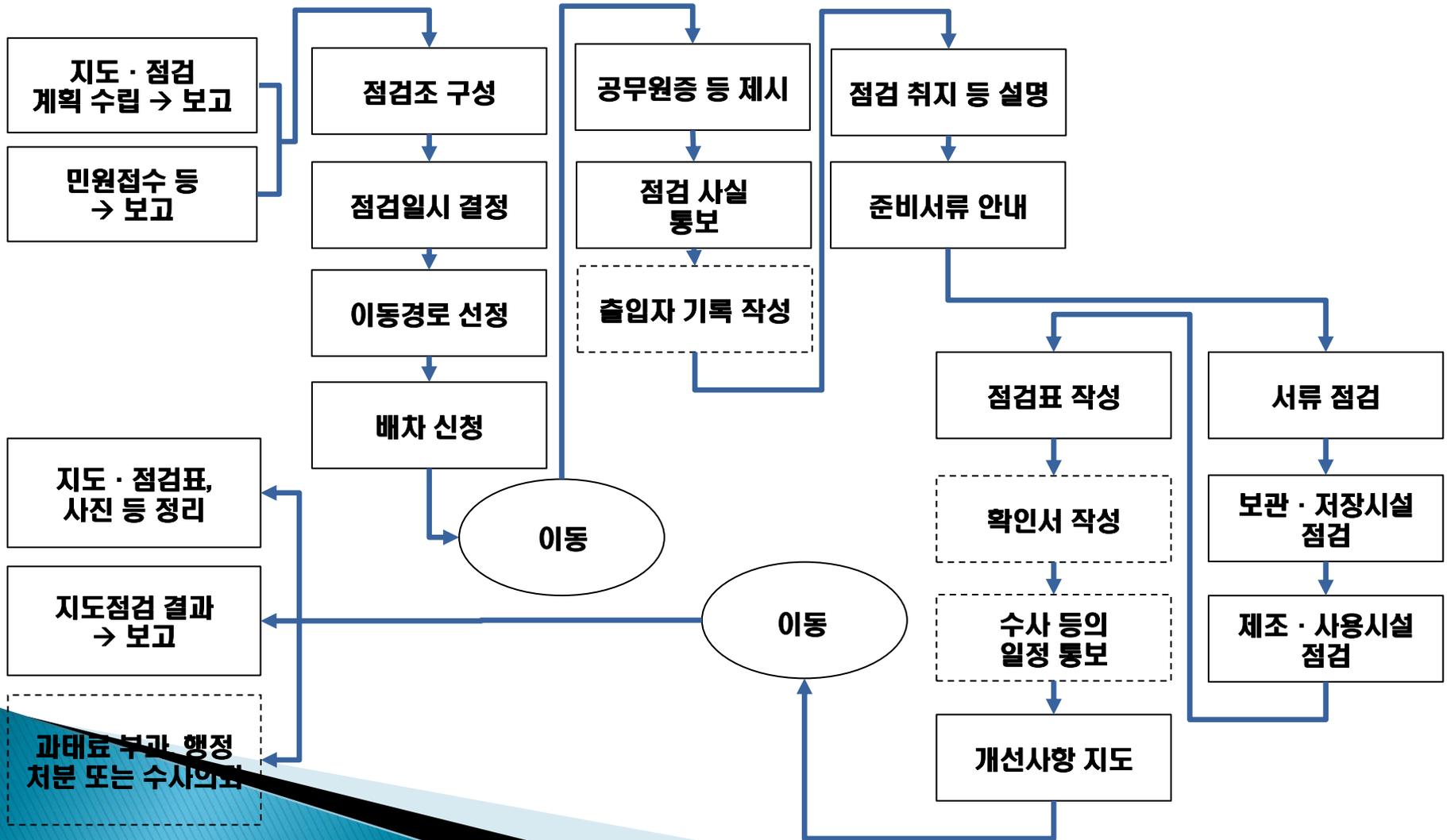
화관법 정책 방향

6

화관법 주요 위반사례 및 당부사항

지도 · 점검 규정 > 지도점검 절차 등

절차



지도 · 점검 규정 > [영업자]지도점검시 요청서류

요청서류

- 유해화학물질 영업 허가증[신청서]
- 사업자등록증
- 유해화학물질관리자 신고증, 자격증빙서류, 교육이수증 등
- 유해화학물질 세부실적보고
- 화학물질관리대장
- 유해화학물질 취급자 및 종사자 교육일지
- 사고대비물질 취급시설 출입자 기록대장 *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정기 · 수시검사 결과서[신청서] *
- 유해화학물질 진열보관계획서 *
- 유해화학물질 운반계획서 관리대장 *
- 장외영향평가서 및 위해관리계획서, 검토결과서[신청서] *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자체점검대장 *
- 화학물질확인명세서, 수입신고증 등 *
- 유해화학물질 취급 도급 내역 및 도급신고 수리증 *
- 유해화학물질 공동 활용 승인서 *

지도 · 점검 규정 > 화관법

보고 및 검사 등

[화관법] 제49조(보고 및 검사 등) 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각각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보고를 명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사업장 또는 시설에 출입하여 화학물질을 채취하게 하거나** 관련 서류 · 시설 및 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험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량의 화학물질 및 시료를 무상으로 수거하게** 할 수 있다.

1. **화학물질확인**을 하여야 하는 자
2. **금지물질의 제조 · 수입 · 판매 허가**를 받아야 하는 자
3. **허가물질의 제조 · 수입 · 사용 허가**를 받아야 하는 자
4. **제한물질의 수입허가**를 받아야 하는 자
5. **유독물질의 수입신고**를 하여야 하는 자
6. **제한물질 · 금지물질의 수출승인**을 받아야 하는 자
7. **유해화학물질의 영업허가**를 받아야 하는 자
8. 유해화학물질 영업자의 **권리 · 의무 승계신고**를 하여야 하는 자
9. **사고대비물질의 관리기준**을 지켜야 하는 자
10. **화학사고를 신고**하여야 하는 자
11.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은** 자

지도 · 점검 규정 > 화관법

출입 · 검사

[화관법 시행규칙] 제54조(출입 · 검사)

①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출입 · 검사**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 행한다.

1. 정기 또는 수시 지도 · 점검계획에 따른 경우
2. 화학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다른 기관의 정당한 요청이 있거나 민원이 제기된 경우
4. 이 법의 허가 · 신고 또는 승인 등의 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5. 장외영향평가서 및 장외 평가정보 변경검토서의 사실 여부 및 준수 여부를 확인하려는 경우
- 5의2. 시범생산 계획서의 사실 여부 및 준수 여부를 확인하려는 경우
6.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배치 · 설치 및 관리기준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려는 경우
7. 개선명령 또는 조치명령 등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려는 경우
8.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려는 경우
9. 사고대비물질 관리기준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려는 경우
10. 위해관리계획서의 사실 여부 및 준수 여부를 확인하려는 경우
11. 화학사고 신고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려는 경우
12. 화학사고 현장 대응을 하려는 경우
13. 화학사고 영향조사를 실시하려는 경우
14. 화학물질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도 · 점검 규정 > 통합지도점검규정

출입 · 검사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 · 점검규정]

[별표 3] 수시 지도 · 점검 기준(제19조제3항 관련)

1. 가뭄, 장마철, 추석·설 연휴 등 환경오염 취약시기
2. 환경오염관련 민원 다발지역, 오염우심지역 및 취약지역
3. 오염피해 진정 등의 민원이 있는 경우
5. 사업자가 허가(변경허가)·신고(변경신고), 심사·등록·승인 및 배출시설의 가동개시 신고를 할 경우와 개선명령·조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에 대한 현장 확인이 필요할 경우 등
6. 환경오염사고(폐수 무단방류, 화재, 폭발 등)가 발생하였거나 지도·점검 결과 생산공정 또는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노후화 등으로 사고발생 우려가 높은 사업장
7. 굴뚝 자동측정기기의 측정자료 이상, 지역오염도의 심화 등 점검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객관적인 사실이 있는 경우
10. 「화학물질관리법」 제24조에 따른 관리기준 준수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경우
11. 「하수도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된 제품과 생산한 제품이 상이할 경우
12. 타 기관으로부터 지도·점검의 요청이 있는 경우

지도 · 점검 규정 > 통합지도점검규정

정의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 · 점검규정] 제2조[용어정의]

3. "점검기관"이란 자치단체의 장과 환경청장(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한 지도 · 점검의 경우, 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장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4. "검사기관"이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0조제2항,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7조제2항, 「악취방지법」 제18조제1항,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63조 또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9조 등 해당 법률에서 각각 규정한 오염도검사기관을 말한다.

5. "지도 · 점검"이란 한 사업장내에 「대기환경보전법」, 「소음 · 진동관리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폐기물관리법」, 「**화학물질관리법**」, 하수도법」,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악취방지법」 및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관리법」 등 관련규정에 따른 **허가 및 등록 사항의 준수 등 위법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시료 채취, 관계서류, 시설 점검 또는 관련 장비 등을 검사하는 것**을 말한다.

지도 · 점검 규정 > 통합지도점검규정

[별지 제2호서식(16)호]

유해화학물질영업자 지도·점검표

(업종 : 제조, 판매, 보관저장, 운반 또는 사용업 기체)

1. 사업장현황

허가번호	허가증상 허가번호	허가일자	최초 또는 갱신 허가일자
사업장명	허가증상 사업장명 ¹⁾		
소재지	허가증상 소재지 등 ¹⁾ (Tel : 000-000-0000)		
대표자	허가증상 대표자명 ¹⁾	사업자등록번호	허가증상 사업자등록번호 ¹⁾
유해화학물질관리자	성명	선임증상 관리자 ²⁾	소속부서
	자격	자격종, 교육 등 ²⁾	직위
제조(사용, 판매, 보관저장, 운반, 수입)품목	연간제조(사용, 판매, 보관저장, 운반, 수입)량(톤)	통상저장량(톤)	기 타
허가증과 실적보고 내역 확인하여 업종별로 기재 ³⁾	허가증과 실적보고 내역 확인하여 업종별로 기재 ³⁾	통상 보관·저장량을 기재하거나, 화학물질관리대장 확인후 기재 ³⁾	사업장 면적 0000 ³⁾ ㎡
			종업원수 000 ²⁾ 명
취급시설 정기·수시 검사 대상여부	취급시설이 있으면 대상(검사일 기재)	위해관리계획수립 대상 여부	연간 매출액 000 ⁴⁾ 천원
			타업종 등록현황
			수질·대기 1종, 위 험물 저장소 등
			사고대비물질은 규정수량 이상 취급시 대상

210㎥×297㎥(일반층지 60g/㎥(재활용용))

- 1) 사업자등록증과 허가증을 비교하여 변경신고 사항 등이 있는지 확인
- 2) 유해화학물질관리자 선임규정(원칙), 자격 취득 여부(자격종, 교육 등), 교육여부 확인
- 3) 취급시설이 허가증과 달리 변경되었는지 변경허가 사항 확인

2. 점검사항 및 결과

구분	점검사항	점검결과
1. 일반사항 제18조 제24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업허가대상의 변경 여부 (보관 저장시설의 100분의 50이상의 증감, 연간 제조사용하는 유해화학물질의 100분의 50이상 증가 및 종류변경, 장의 평가정보의 변경 사업장 소재지 등) • 정기검사 결과에 따른 개선명령 이행여부 	(서류) 실적보고 및 화학물질관리대장을 허가증상 취급예정량과 비교 변경허가 여부 확인 (현장) 취급시설(보관저장, 운반)용 허가증과 비교 등 ※ 판매업의 취급량은 관계 없음
2. 물질관리 제13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시행규칙 별표 1) 준수 여부 	(현장) 혼합보관, 세안시설, 동반운송 물질, 불합성 물질, 위생, 운반상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 ※ 시설부분(별표5)은 최대 '19년까지 유예
3. 사고대비물질 제40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고대비물질 취급자의 관리기준 준수여부(시행규칙 별표 9) 	(현장) 개인보호장구, 출입자기록, 위해관리계획 등 확인 ※ 개별기준(16종) 확인
4. 보호장비 제14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급 유해화학물질에 적합한 개인보호장구 착용 여부 	(현장) 취급물질을 적합한 보호장구 확인(개인보호장구 착용 규정 참고)
5. 물질전달·보관량 제한 제15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열·보관 계획서 작성 여부 • 유해화학물질의 보관저장 시설 보유 여부 • 일정량 초과 운반시 운반계획서 작성 여부 (유해화학물질 : 5,000kg, 허가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사고대비물질 : 3,000kg) 	(현장) 전열보관 계획서 작성여부, 보관저장시설 보유 여부, 규정량 이상 운반시 운반계획서 작성·제출 여부 확인
6. 표시사항 제16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해화학물질에 관한 표시 여부 - 표시사항 : 명칭, 그림문자, 신호어, 유해위험 문구, 예방조치 문구, 공급자 정보, 국제연합번호 등 - 표시대상 : 보관 저장시설, 전열·보관장소, 운반차량, 용기 포장 등 	(현장) 전열보관 계획서 작성여부, 보관저장시설 보유 여부, 규정량 이상 운반시 운반계획서 작성·제출 여부 확인
7. 장의역항평가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의역항평가서 - 장의역항평가서 작성 및 제출 여부 	(서류) 장의역항평가서 정해진 기간내에 제출 여부 확인
8. 위해관리계획서 제14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해관리계획서 - 위해관리계획서 작성 및 제출 여부 - 지역사회 주기적 고지 여부 	(서류) 위해관리계획서 정해진 기간 내에 제출, 주민고지 여부 확인

지도 · 점검 규정 > 통합지도점검규정

【별지 제3호서식(2)】

발급번호	확 인 서	기관장인
기관별 일련번호		도장
<p>사업장명 : 사업자등록증 또는 허가증상 사업자명 (전화번호) 소재지 : 사업자등록증 또는 허가증상 소재지 대표자 : 사업자등록증 또는 허가증상 대표자명</p> <p>상기 본인은 2018년 7월 3일 화학물질관리법(률)에 따라 귀 기관에서 당사(시설)의 환경관리사항을 점검한 결과, 다음 사항을 확인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 다 음 -</p> <p>1. 점검일시 : 2018년 00월 00일 14:00경 2. 관련법 조항 : 「화학물질관리법」 제28조5항 및 같은 법 제40조 3. 확인내용 : 변경허가 미이행, 사고대비물질 관리기준 위반</p> <p>당사는 반도체를 생산하는 유해화학물질 사용업체로서,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사항 중 허가받은 유해화학물질 품목 중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고, 사고대비물질을 취급하는 경우 해당 물질에 적합한 개인보호장구를 착용하여야 하나, 허가받지 않은 메탄올(67-56-1, 55%)을 2015.1.1. ~ 2018.7.3. 까지 약 18톤을 사용하였으며, 해당 물질에 적합한 개인보호장구를 지급·착용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합니다. 끝.</p> <p style="text-align: right;">2018년 7월 3일</p> <p>확인자(본인/대표자) ○○○ (인)(생년월일 : 1900년 00월 00일) 입회자(사본수령, 환경(기술)관리인) (인)(생년월일 :) (우편발송일:)</p> <p>점검자 : 소속 ○○환경청 직급 ○○주사 성명 ○○○ (인) 소속 ○○시청 직급 ○○주사보 성명 ○○○ (인) 소속 ○○공단 직급 ○○전문위원 성명 ○○○ (인)</p> <p style="text-align: center;">○○○○○ 장 귀 하</p>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목 차

1

일반 현황

2

지도·점검 절차 및 규정

3

지도·점검 및 개선 사례

4

화관법 주요 개정사항

5

화관법 정책 방향

6

화관법 주요 위반사례 및 당부사항

지도 · 점검 및 개선 사례 > 표시위반

목재 방부제(CMIT)



지도 · 점검 및 개선 사례 > 표시위반

목재 방부제(CMIT)



지도 · 점검 및 개선 사례 > 표시위반

목재 방부제(CMIT)



지도 · 점검 및 개선 사례 > 표시위반

목재 방부제(CMIT)

- 건축자재 도소매, 목재가공 및 제조 업체
-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는 유해화학물질을 보관·저장하는 장소 등에 유해화학물질에 관한 표시를 하여야 하나,**
- 5-클로로-2-메틸-4-이소티아졸린-3-온 (CAS No. 26172-55-4, 약칭 CMIT) 2.4%가 함유된 DH-405(방부전처리제, 유독물질)을 '15.7.6.에 300kg, '16.4.7.에 200kg 구매하여 보관·사용하면서 보관장소 등에 유해화학물질 표시를 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

1% 이상은 「유독물질 및 제한물질·금지물질의 지정(환경부고시 제2016-2호)」상 고유번호 2012-1-644인 유독물질

- ➔ 상기 사실은 각각 「화학물질관리법」 제 16조제2항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59조 제4호에 따라 고발



지도 · 점검 및 개선 사례 > 표시위반

규사 코팅제(DMI)



지도 · 점검 및 개선 사례 > 표시위반

규사 코팅제(DMI)



지도 · 점검 및 개선 사례 > 표시위반

규사 코팅제(DMI)

- 규사 코팅을 주업으로 하는 제조업체
-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는 유해화학물질을 보관·저장하는 장소 등에 유해화학물질에 관한 표시를 하여야 하나,**
- 4,4'-디이소시아산 디페닐메탄[CAS No. 101-68-8, 약칭 MDI] 65~75%가 함유된 COSMONATE LL(폴리우레탄계 중합물 제조 구성성분, 유독물질)을 '16.1.5.부터 '16.5.24.까지 5,000kg을 구매·사용하며, 점검일 현재 250kg 드럼 4개가 보관된 시설 등에 유해화학물질 표시를 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

4,4'-디이소시아산 디페닐메탄[Diphenylmethane 4,4'-diisocyanate; 101-68-8]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유독물질 및 제한물질·금지물질의 지정(환경부고시 제2016-2호)」 상 고유번호 97-1-423인 유독물질



➔ 「화학물질관리법」 제16조제2항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59조제4호에 따라 고발

지도 · 점검 및 개선 사례 > 변경허가 미이행

품목 추가 미이행 등



지도 · 점검 및 개선 사례 > 변경허가 미이행

품목 추가 미이행 등



지도 · 점검 및 개선 사례 > 변경허가 미이행

품목 추가 미이행 등

- 유해화학물질 보관 · 저장업체
-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 받은 사항 중 유해화학물질 품목을 변경하려면 변경허가를 받아야 함
- 2013.12.11.부터 2015.1.9.까지 허가 받지 않은 '디메틸디치오카바산 나트륨*' [CAS NO. 128-04-1, 40%] 240kg 용량 드럼 168개를 보관 · 저장하는 영업을 하였음을 확인

디메틸디치오카바산 나트륨[Sodium dimethyldithio carbamate; 128-04-1]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유독물질 및 제한물질 · 금지물질의 지정(환경부고시 제2016-2호)」상 고유번호 2001-1-516인 유독물질

➔ 「화학물질관리법」 제28조제5항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61조제4호에 따라 고발



지도 · 점검 및 개선 사례 > 개선 사례



■ 세부내용 조치일정

위치	문제점	대책	조치 일정	
			계획	완료
염산 가성소다 저장탱크	5톤 염산 탱크 2기 배관 폐수장 가성소다 배관 파손 우려	덮개 설치하여 파손 방지	3/14	3/14

지도 · 점검 및 개선 사례 > 개선 사례

개 선 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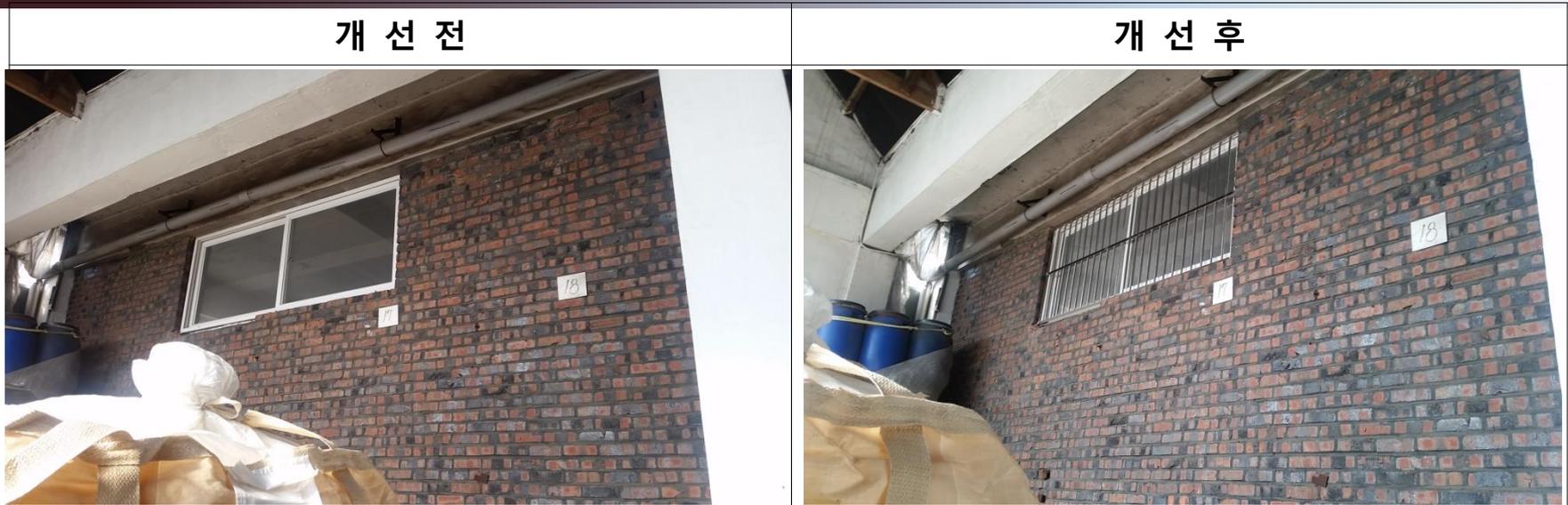
개 선 후



■ 세부내용 조치일정

위치	문제점	대책	조치 일정	
			계획	완료
공장전체	보호장비함 일부 미비치 보호구 적재 미비 작업자 보호구 착용 미비	보호장비함 추가 구매하여 비치 노후된 장비함 교체 보호구 추가 적재 작업자 보호구 착용 강화	3/14	3/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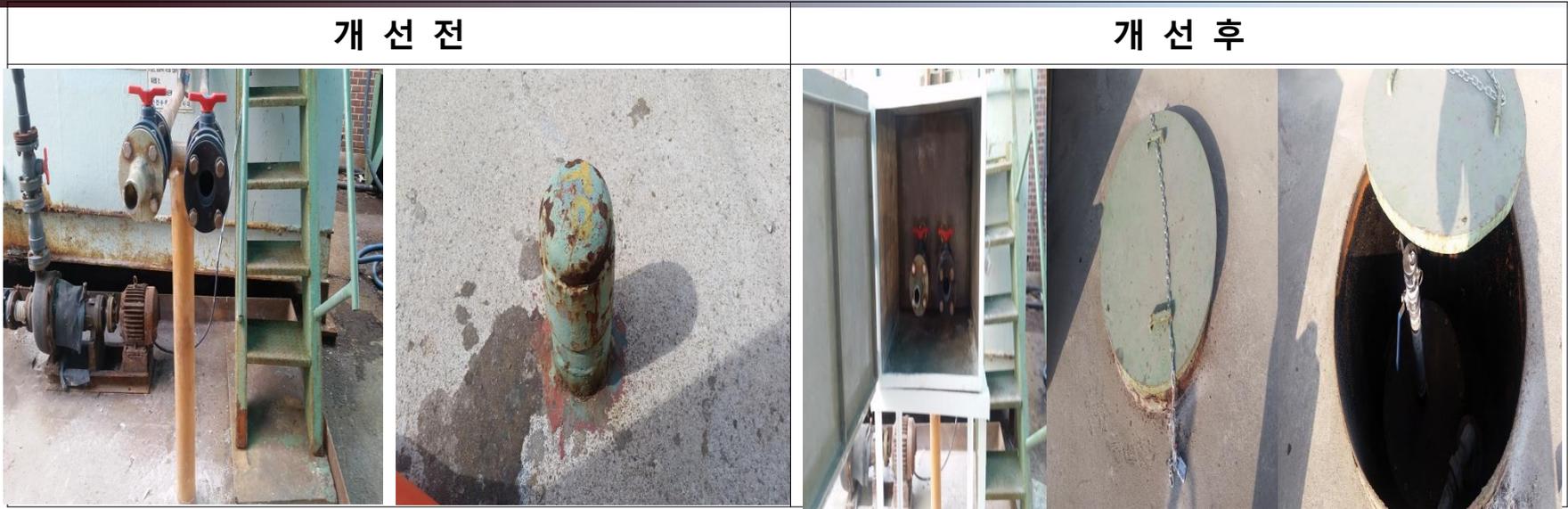
지도 · 점검 및 개선 사례 > 개선 사례



■ 세부내용 조치일정

위치	문제점	대책	조치 일정	
			계획	완료
유독물 보관 창고	사고대비 유독물 보관창고 창문 철망 미설치	철망 설치	3/14	3/14

지도 · 점검 및 개선 사례 > 개선 사례



■ 세부내용 조치일정

위치	문제점	대책	조치 일정	
			계획	완료
유독물 저장탱크류	주입구 부근 화관법 상의 표지 미비 투입구 시설관리 미비 황산, 가성소다, 염산, 톨루엔, 메탄올 지하탱크 포함.	주입구 부근에 화관법 상의 표지 부착(GHS 표지) 투입구 박스형 시건장치 및 투입구 소켓 설치 지하저장탱크 투입구 및 투입방법 개선	3/21	3/21

지도 · 점검 및 개선 사례 > 개선 사례



■ 세부내용 조치일정

위치	문제점	대책	조치 일정	
			계획	완료
가성소다 저장탱크	방호벽 크랙발생 탱크 지지대 부식 발생	방호벽 보수 지지대 사용가능 점검 후 교체 및 보수 결정	3/21	3/21

지도 · 점검 및 개선 사례 > 개선 사례

개 선 전



개 선 후



■ 세부내용 조치일정

위치	문제점	대책	조치 일정	
			계획	완료
지하저장탱크	펌프 노후	펌프 도색 주변 배관 및 부품 교체	3/21	3/21

목 차

1

일반 현황

2

지도·점검 절차 및 규정

3

지도·점검 및 개선 사례

4

화관법 주요 개정 사항

5

화관법 정책 방향

6

화관법 주요 위반사례 및 당부사항

주요 내용

- ▶ 대상: 화학물질 배출량조사 대상 사업장
 -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화학물질을 일정량 이상 배출하는 경우
- ▶ 주요 내용
 - (사업장)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를 작성, 제출(5년마다), 미제출/허위제출시 과태료(1천만원 이하)
 - (환경부) 계획서 접수, 검토 후 지자체장에게 제공
 - (지자체) 계획서 내용 공개
 - 계획서 내용 중 영업비밀은 비공개 요청(사업장 → 환경부)
- ▶ 관리, 감독 및 지원
 - 환경부 및 지자체 공무원은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하거나 사업장에 출입·조사, 기술적·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
- ▶ 시행일: 2019.11.29.

주요 내용

- ▶ 공개대상 확대
 - 화학물질 통계조사·배출량조사 결과를 사업장별로 공개(현행과 같음)
 - 화학물질관리법령을 위반한 사업장의 화학물질 취급정보 공개
 - **통계조사, 배출량조사 대상 사업장이 아니어도 공개(대상 확대)**
 - 화학물질 취급정보: 취급자의 인적사항, 취급량 및 취급시설 정보, 법령 위반사실 등(현행과 같음)
- ▶ 비공개 요청절차 명시, 허위제출시 과태료 부과
 - 공개대상 사업자 중 비공개하고자 하는 자는 시행규칙에 따라 비공개 요청서류 제출
 - 허위제출시 과태료(1천만원 이하)
- ▶ 시행일: 2018.11.29.

3.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전문기관 의무 강화

주요 내용

- ▶ 전문인력 등의 변경시 변경내용을 보고
 - 위반시 과태료(1천만원)
- ▶ 준수사항(신설)
 - (제23조의2) 전문인력 등에 대한 주기적인 교육 실시
 - (제23조의3) 재위탁 금지, 거짓/부실로 작성 금지 등
- ▶ 지정취소 또는 영업정지
 - 전문인력 교육 미실시, 영업정지기간 중 계약 체결, 준수사항 위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등
 - 영업정지 처분시 종전에 체결한 계약 당사자에게 통지
- ▶ 시행일: 2018.11.29. 시행

주요 내용

- ▶ 위해관리계획서 검토시 현장조사 실시
 - 영업허가를 신규로 받아야 하는 경우
 - 취급시설의 사고위험성을 고려하여 시행규칙에 정한 경우
- ▶ 위해관리계획서 이행
 - (사업장) 위해관리계획서 내용을 성실히 이행
 - 미이행시 영업허가 취소 또는 정지
 - (환경부) 이행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 필요시 시정조치 요구
 - 시정조치 명령 미이행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 시행일: 2018.11.29

주요 내용

- ▶ (개정배경) 기업의 전자문서 제출 요구에 부응
 - 또한, 제출된 장외영향평가서, 위해관리계획서를 화학사고 예방·대응정보로 활용할 수 있도록 DB화할 필요
- ▶ (기존) 종이문서 3부를 제출
- ▶ (개정) 종이문서 3부 또는 전자문서로 제출
 - 별지서식은 전자문서로, 공정도면 등은 전자화문서로 제출 가능
 - 관련 규정(시행규칙 제19조 및 제46조)

소량 취급시설 기준

- ▶ (개정배경) 취급규모에 따라 차등화된 시설 기준 마련 필요
 - 화학사고 발생 정도 등이 낮은 소량 취급 사업장도 대형 사업장과 동일한 수준의 설치·관리기준을 준수하고 있는 과도한 부담 발생
- ▶ (기존)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규모나 취급량과 무관하게 취급 시설 기준을 일률적으로 적용
- ▶ (개정) 화학사고 발생에 따른 인명·재산·환경상 피해가 크지 않을 것으로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소규모 취급 시설에 대해서는 별도의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기준을 적용
 - 유해화학물질 소량 취급시설에 관한 고시 (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18-4호, 2018. 7. 3)

사업장 경계 표시

- ▶ 사업장 경계 표시 명확화(제12조)
 -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은 ‘사업장 경계에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임을 표시’하여야 하나, 인지도가 낮음
 - 시행규칙 별표 2 제4호에 사업장 경계표시 양식 구체화

운반 시설

- (개정배경) 고체·액체를 담은 운반저장설비(탱크로리)의 공간용적 기준 명확화 필요
- (기존) 공간용적 개념 부재
- (개정) 운반 저장설비(탱크로리)의 공간용적은 운반 저장설비 내용적의 5% 이상 10% 이하 → 여유공간 확보로 화학사고 예방

시약판매자 및 통신판매자 관리

- ▶ (배경) 시약 판매자에 대한 현황 파악, 지도·점검 등 어려움
- ▶ (조항) 제31조의2, 제31조의3, 제53조, 제56조
 - (고지내용) 시약은 실험용, 연구용 등 해당 용도 사용 및 취급기준 준수
 - 시약 용기에 표시하거나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표시(시약정보요약서 첨부)
 - 진열/보관 판매시 판매장 입구에 고지, 통신 판매시 홈페이지에 고지
 - 판매업 (변경)신고
 - 취급품목·연간예정량, 취급시설 명세서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에 신고
 - 사업장 명칭·대표자·사무실 소재지를 변경하거나,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 시약 품목의 수가 100분의 30 이상 증가하는 경우 변경 신고
 - (실적 보고) 연 1회 화학물질관리협회에 세부실적을 보고
 - (대장 작성) 화학물질관리대장 작성 후 최종 기재일로부터 5년간 보존

통신판매시 본인인증(제30조의2)

- ▶ (배경) 인터넷 상에서 판매하는 경우, 판매자가 구매자 인적사항 확인 어려움
- ▶ (내용) 유해화학물질을 판매하는 자가 통신판매를 하는 경우 구매자 실명·연령 확인 및 본인 인증을 하기 위한 수단·방법 규정
 - 사업자등록증, 공인인증서, 본인확인기관을 통한 본인확인

취급시설 가동중단 신고(제39조)

- (배경) 장기간 가동중단 시 조치사항은 규정하고 있으나 장기간 가동중단 중인 사업장 현황 파악 불가
- (내용) 유해화학물질 취급 시설을 60일 이상 가동하지 않는 경우 가동중단 예정일 10일 전에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신고

화학사고 발생시설 가동중지(제50조의2, 제50조의3)

- ▶ (배경) 화학사고 발생시 현장에서 해당시설의 가동시설을 중지시킬 수 없어 피해확산 방지 등 신속한 조치에 한계
- ▶ (내용)
 - 화학사고 발생시설의 가동중지명령 요건 마련
 - 화학사고 발생시 시설 가동으로 인해 추가적 위험이 예상되거나 환경 오염이 발생한 경우 등, 현장수습조정관이 가동중지 명령
 - 가동중지 시설에 대한 해제 절차 마련
 - (사업자) 안전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조치 실시 → 가동중지명령 해제 요청
 - (지방환경관서) 해당 사업장의 안전성 확인 → 가동중지명령을 해제, 통보

목 차

1

일반 현황

2

지도·점검 절차 및 규정

3

지도·점검 및 개선 사례

4

화관법 주요 개정 사항

5

화관법 정책방향

6

화관법 주요 위반사례 및 당부사항

화학물질 이력추적관리제도

- ▶ (배경) 현행 화학물질확인명세서만으로는 국내 유통관리에 한계
 - 철강 등 4개 업종 경우 확인 명세서 미제출률이 44.1%(‘13.1월 ~’15.8월, 통관 20만 1,200건 대상)
 - 확인명세서 허위제출시 교차 검증을 위한 정보나 수단 미흡
- ▶ (내용)
 - 화학물질 확인 신고제 도입(안 제9조, 안 제20조제2항)
 - 확인명세서를 신고로 전환하고 화학물질(혼합물 포함)별로 화학물질확인 번호 *부여
 - * 제조국, 신고년도, 유해위험정보, 일련번호, 성상 등 약 20개 자리로 생성
 - 유독물질 수입신고 폐지
 - 국외제조자의 대리인 선임 신고제(안 제9조의2)
 - 국외제조자가 영업비밀 노출 등을 우려할 경우 국내 대리인을 선임하여 확인신고 등 의무 대행

화학물질 이력추적관리제도

▶ (내용)

- 화학물질 하위사용자 등에 대한 정보제공 의무화(안 제9조의3)
 - 제조·수입업자를 비롯한 양도인은 화학물질확인번호, 유해위험정보, 안전 취급정보 등을 양수인에게 제공. 다만,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물질안전 보건자료를 작성·제공하는 경우 이에 포함하여 제공 가능
- 화학물질 유통관리 시스템 구축·운영(안 제10조제2항 등)
 - 화학물질확인신고, 통계조사, 수출입 등 유통실태를 상시 파악·감시할 수 있는 정보체계(화학물질 유통관리 시스템) 구축

⇒ 화학물질 제조·수입단계부터 고유 식별번호를 부여 함으로써 유통 전 과정을 상시 파악할 수 있는 체계 구축

장외영향평가·위해관리계획서

▶ (배경) 주민·환경피해 우려가 거의 없는 극소량 취급시설도 장외영향평가서를 일괄작성토록 하는 반면, 허위제출시 처벌근거 부재

▶ (내용)

- 장외영향평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제출시
 - 3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장외영향평가 제출 면제 대상 확대
 - ‘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실,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시설
 - 그 밖에 화학사고 발생으로 주변 영향이 크지 아니하다고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 위해관리계획서 주민고지항목 관리 강화
 - 심사항목에 주민고지 사항의 적절성 추가
 - 주민고지 수단에 대해 2가지 이상(홈페이지+서면, 개별, 집합 중 택일) 확대

정보 비공개 신청 허위 관리 강화

- ▶ (배경) 법 개정에 따른 하위법령 마련
- ▶ (내용)
 - 정보 비공개 신청 허위자료 제출시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
 - 취급정보 비공개 신청서 등을 거짓으로 제출하는 경우 신청 또는 소명 항목수 당 150만원(1차) ~ 300만원(3차) 부과
 - * 예시) 000 제품의 명칭, △△△ 제품의 성분별 함량 등

영업자 기술인력

- ▶ (배경) 종업원 30인 미만 업체는 기술인력 자격(기술사, 기능장 등)
을 충족하는 인력 확보가 곤란하며, 변경신고 부재로 업체에서
기술인력 보유 여부 확인 어려움
- ▶ (내용)
 - 종업원 30인 미만 업체에 대해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실시하는 전문
교육과정을 이수·합격한 자도 기술인력 요건으로 인정
 - 기술인력을 선임·해임 또는 변경한 경우 환경청에 변경신고

목 차

1 일반 현황

2 지도·점검 절차 및 규정

3 지도·점검 및 개선 사례

4 화관법 주요 개정사항

5 화관법 정책 방향

6 화관법 주요 위반사례 및 당부사항

영업 허가 분야

▶ (사례1) 무허가 영업

- 신규 유독물질로 지정되었으나, 운반업체가 이를 인지하지 못하여 영업허가를 받지 않고 운반하여 적발
- > 유해화학물질 무허가 영업으로 고발 조치

▶ (사례2) 영업변경허가 미이행

- 유해화학물질 사용업 허가를 받은 업체가 AT-401(수산화나트륨 5% 함유), ST-9(수산화나트륨 35% 함유), NP201(노닐페놀 20% 함유)된 제품을 신규 사용, 유해화학물질 함유 여부 미인지
- > 품목 추가에 따른 변경허가 미이행에 따른 고발 및 행정처분

영업 허가 분야

- ▶ (사례3)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미이행
 - 산업용 마킹기를 제조하는 업체에서 메틸에틸케톤이 90% 이상 들어간 잉크를 1톤 이상 사용하면서 사용업 허가를 득하지 않음
- ▶ (사례4) 운반차량이 없는 유해화학물질 제조업체에서 유해화학물질 운반차량 2대를 신규 운영하면서도 변경허가 미이행
 - > 운반시설의 100분의 50 이상 증가: 변경허가 대상임
- ▶ (사례4) 유해화학물질 제조업에서 제조한 유해화학물질이 아닌 별도 구매하여 판매하는 경우는 판매업 허가 대상임

1. 화학물질관리법 주요 위반사례(3)

취급시설 검사 분야

- ▶ (사례1) 펌프설비에서 취급물질 누출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제1호] 다. 사고예방

- 24) 유해화학물질의 유출·누출로 인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나) 유해화학물질을 취급 저장하는 설비의 연결 부분은 누출되지 않도록 밀착하여야 하고, 매주 1회 이상 연결부분에 이상이 있는지를 점검할 것

1. 화학물질관리법 주요 위반사례(4)

취급시설 검사 분야

▶ (사례2) 사고대비물질 관리기준 미준수

실(옥)내 저장시설



실(옥)외 저장시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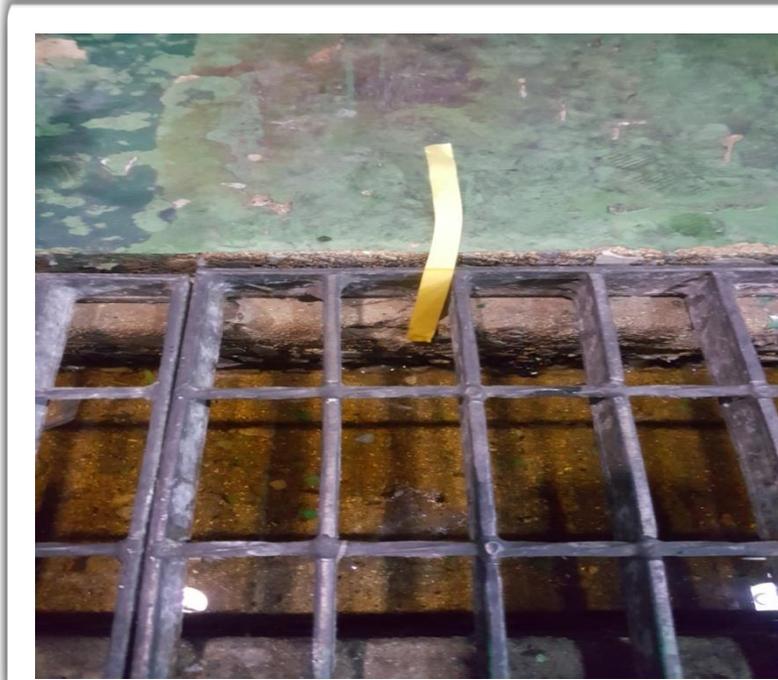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9] 사고대비물질 관리기준 2. 개별기준 다.

- 1) 옥내 보관시설 중 창문이 있는 경우 창문에는 보호철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 2) 옥외 보관시설에는 관계자가 아닌 자의 출입을 통제할 수 있는 울타리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1. 화학물질관리법 주요 위반사례(5)

취급시설 검사 분야

▶ (사례3) 취급시설 인근 화학물질 방치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제3호] 다. 사고예방

48) 물과 접촉하여 위해성이 증가하는 물질을 보관·저장하는 시설주변에 설치된 방류벽, 집수조 등에 물이 괴었을 때는 지체 없이 배출보하도록 하여야 한다.

기타 분야

- ▶ (사례1) 취급시설의 자체점검 미이행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장이나, 점검 당일까지 약 2개월 간 취급시설에 대하여 자체점검 및 대장 작성 미이행
- ▶ (사례2) 유해화학물질관리자 미선임
 - 유해화학물질 관리자(2명)를 선임했지만, 2017년 12월 31일까지 화학물질관리법 상 관리자 선임기준에 맞는 인원(3명) 미충족
- ▶ (사례3) 관리자 선임 및 퇴임 신고 미이행
 - 관리자 퇴직시 지체없이 퇴임 신고해야 하나, 인수인계 미비로 퇴임 미신고 및 신규 관리자 미선임

안전교육기관 및 교육 관련

▶ (1) 표준교재를 기준으로 강의 진행

- 개인별로 원활한 강의를 위해 개별 자료를 첨가할 수 있으나 적합

하지 않거나 다른 과정과 중복인 내용은 배제

- (사례1) 분류 및 표시 과목에서 사고사례 강의
- (사례2) 급성노출, 물질 위험성 보다 만성노출, 발암성을 강조하는 내용(화학사고 특성을 고려하여 내용 선정 필수)

▶ (2) 강사 및 교보재 품질 관리 철저

- (사례1) 교수의 잦은 일정 변경(3회 이상 발생시 교수 교체 검토)
- (사례2) 주기적인 장비 점검, 별도 보관 장소 확보, 청결 관리 등을 통해 방치되는 장비가 없도록 관리

안전교육기관 및 교육 관련

- ▶ (3) 실습 과목의 효율적인 운영 방법 도출(교육 질 향상)
 - (사례1) 교육생 대기 시간이 실습시간에 비해 많아 교육 효과 감소
 - (사례2) 교육장 이탈 교육생 관리강화
- ▶ (4) 관리자 교육 및 취급담당자 교육 일정 확대 건의
 - 지방청에서 교육 개설 요구시 적극 검토 요청
 - ※ 자진신고 결과 중 안전교육 대상업체 현황
 - 무허가(4,700개), 관리자 미선임(700개), 안전교육 미이행(100개)
- ▶ (5) 협회는 주기적으로 교육장 확인, 미흡사항에 대한 즉시 조치
 - 강의장 내 직원 배치하여 강의 지원 및 교육생 불편 즉시 조치
- ▶ (6) 집합교육시 인근 영세 사업장 합동교육 인정건의

감사합니다.



**한강유역환경청
시흥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